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

준법감시인 심의필번호 제2012-약관-42호 / 심의일 2012. 6.11 2010. 8.13 제정 / 2011.11.25 개정 / 2012. 6 12 개정

제1조(적용범위)

퇴직연금 정기예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한다.) 거래시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'예금거래 기본약관' 및 '거치식예금약관'을 적용합니다.

제2조(예금종류)

이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운용합니다.

제3조(가입기간)

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개월이상 24개월 이하, 3년, 5년으로 합니다.

제4조(가입대상)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특정금전신탁의 수탁자로 합니다.

제5조(가입금액)

이 예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1원 이상으로 합니다.

제6조(재예치)

- ① 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, 이 예금의 만기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합니다. 재예치기간은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하며, 재예치이율은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등 에 공시된 이율을 적용합니다. 다만, 최초 신규시 자동재예치를 신청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매 만기시마다 별도의 의사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- 이 경우, 특약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운용지시서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 - 퇴직연금정기예금 재예치 특약 -

퇴직연금정기예금 약관 제 6 조 ①에 따라, 동 예금의 매 만기일마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재예치하는 것으로 합니다.

② 상기 ①에도 불구, 거래처가 재예치 의사없음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예치 하지 않으며, 거래처의 별도 의사표시에 따라 처분합니다.

제7조(이자)

- ① 이 예금의 이율결정일은 예금일 및 매 갱신일로 합니다.
- ② 이 예금의 이율은 매 이율결정일에 영업점에 게시한 계약기간별 이율에 따라 변경 적용합니다.

- ③ 이 예금의 이자는 만기일에 셈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
- ④ 만기일 이후 지급 청구할 때는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.

제8조(중도해지이율)

- ①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예금주의 청구가 있을 때 지급함이 원칙이나 만기일 전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예금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일 또는 갱신일에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연금제도 및 당행이 수탁자인 퇴직연금계약(이하 퇴직연금계약)에서 인정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(인출 포함) 하는 경우에는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.
 - 1. 퇴직 등 급여 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 - 2. 퇴직연금제도에서 정한 다음 각호의 중도인출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가.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 - 나.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
 - 다.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
 - 라.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 - 마. 그 밖에 천재, 사변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
 - 3. 퇴직연금계약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 사유 발생시
 - 4. 퇴직연금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지급사유 발생시
 - 5. 퇴직연금제도의 동일 사업자내의 제도 전환
 - 6. 개인형 개인퇴직계좌의 법정요건에 따른 중도인출 사유 발생시
 - 7. 개인형 개인퇴직계좌의 급여를 연급지급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

제9조(분할해지)

- ① 이 예금은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. 다만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.
- ② 제1항의 분할해지 횟수에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인출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인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③ 만기일 전 분할해지 하는 경우 분할해지금액에 대한 이자는 제8조에 따라 지급합니다.
- 제10조(거래제한) 이 예금은 담보제공, 질권설정, 양수도가 불가하며 세금우대 및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 할 수 없습니다.

제11조(기타)

이 예금은 통장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.

부칙(1)

이 특약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)

이 특약은 2012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